

<p>정보명</p>	<p>영국의 EPR제도 운영현황</p>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PR 제도의 도입 및 근거 법령 2. EPR 제도의 체계 3. 생산자의 EPR 의무이행 4. 생산자기구의 기능 및 역할 5. EPR의무 불이행시의 제재 6. 영국에서의 EPR 운영 성과
<p>참고자료</p>	<p>생산자책임재활용(EPR) 발전방안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2016)</p>



영국의 EPR 제도 운영현황

1. EPR 제도의 도입 및 근거 법령

- 영국은 1997년 Producer Responsibility Obligations (Packaging Waste) Regulations (“생산자책임의무규정”)을 제정하여 PPW Directive 지침을 법 규정화 하였음.
 - 생산자책임의무규정은 포장의 전 생애(life cycle of packaging)에 관여하는 모든 포장관련 생산자(포장재 수입자, 포장재 생산자, 포장업체, 소매업체 등)가 포장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shared responsibility for all producers involved in the life cycle of packaging)한다는 EPR 개념을 도입하였음.

2. EPR 제도의 체계

가. EPR 의무이행의 주체 및 의무의 범위

- EPR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생산자 및 의무생산자가 재정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회수·재활용 의무의 범위는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짐.
 - 전년도 연 매출액이 2백만 파운드 미만이고 취급 포장재 양이 50톤 미만인 생산자 : 등록의무 없음
 - 전년도 매출액이 2백만 파운드 이상 5백만 파운드 미만인 생산자 : 소규모 생산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할당산식에 따라 의무 회수/재활용량을 계산
 - 전년도 매출액이 5백만 파운드 이상인 생산자: 등록의무 부담하며 할당산식에 따라 의무 회수/재활용량을 계산
- 영국에서 생산자의 의무는 포장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적 책임으로 이해되며(PRN이나 PERN을 구입하여야 하는 의무), 포장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폐기물관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함.
 - 최종 재활용업체는 회수·재활용된 포장재를 PRN이나 PERN51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생산자 또는 생산자기구에 판매함.

나. 대상 품목 및 재활용목표

○ 대상품목

- 알루미늄, 유리, 강철, 폐지, 플라스틱 및 목재로 만든 포장재 및 포장재 재료

○ 생산자책임의무규정에서는 PPW Directive 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재활용·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Table 1 영국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

	목표수치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알루미늄	46	49	52	55
유리	75	76	77	77
glass by remelt	65	66	67	67
철강	73	74	75	76
종이	69.5	69.5	69.5	69.5
플라스틱	42	47	52	57
목재	22	22	22	22
재활용량	76	77	78	79

다. EPR 관련 조직체계

○ 환경당국은 EPR 전반을 총괄하며, 생산자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및 재활용을 담당함.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Valpak (발팩) 등의 생산자기구가 존재함.

3. 생산자의 EPR 의무 이행

가. EPR 의무 이행 체계

○ 환경당국에 등록이 요구되는 생산자(“의무생산자”)는 개별적으로 혹은 환경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생산자기구를 통해 해당 환경당국에 등록하여야 함.

○ 영국에서 의무생산자의 의무는 크게 (1) 환경당국에 등록하고, (2) 매년 의무량에 맞추어 포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할 의무이며(이렇게 재활용한 포장재의 양을 환경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생산자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생산자기구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폐기물 수집 당국과('WCA' , Waste Collection Authorities), 폐기물 처리 당국('WDA' , Waste Disposal Authorities)이 존재하며, WCA는 가정 폐기물과 상업폐기물을 수집하여 WDA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나. 생산자의 의무 이행 방법

- 의무생산자는 연 초에 할당된 회수·재활용 의무량에 해당하는 PRN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이를 환경당국에 다음 해 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의무를 이행함.
 - 의무생산자는 매년 1월 31일 재활용되거나 회수된 포장재의 양을 보고하고, PRN을 국가 포장재 폐기물 데이터베이스(National Packaging Waste Database)에 제출하여야 함.
- 의무생산자 중 환경당국에 직접 등록한 생산자는 매년 등록비를 환경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Valpak과 같은 생산자기구에 가입한 생산자는 각 생산자가 부담하는 의무범위에 따른 비용(연간회비 및 PRN 구입 비용 등)을 해당 생산자기구에 납부하여야 함.
- 생산자기구는 생산자가 납부한 비용을 (1) 환경당국에 납부할 등록비, (2) 생산자기구가 해당 생산자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연간 회비), (3)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증명하기 위한 PRN 구입비용으로 사용함.
 - Valpak의 경우 연간회비는 소규모 생산자와 일반 의무생산자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일반 생산자의 경우에는 의무량의 규모에 따라 475 파운드 내지 2,500 파운드(한화 75만원~ 470만원 상당)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 PRN 구입비용은 필요한 PRN 수량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이므로 구매 시기의 시장가격에 따라 부과함.

다. 분담금 관련

-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영국 EPR제도의 경우, 생산자의 분담금은 PRN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PRN의 가격은 전체 EPR 제도를 운영하는데 에 필요한 비용(즉, 수집,선별,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비용)의 5~10%에 해당한다고 평가됨.

- 경매 방식의 특성상,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인 PRN의 가격은 연 초에 결정되는 의무생산자의 의무량(수요)과 회수/재활용되는 포장재의 양(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일례로 유리병의 경우 PRN의 연간 평균가가 2010년에는 16.33 파운드, 2011년 9.35 파운드, 2012년 33.41 파운드였음.

라. 운영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

- 재정적인 부담의무 이외에도, 전년도 회수·재활용 의무량이 50톤을 초과한 생산자의 경우 운영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운영계획서에는 회수·재활용의무 예상량 및 의무이행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그리고 각 포장재 별 회수·재활용을 위한 솔루션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4. 생산자기구의 기능 및 역할

가. 생산자기구의 EPR 조직 내 기능

- 영국에는 Valpak을 포함하여 30개가 넘는 생산자기구가 존재하며, 생산자 기구 사이에 강한 경쟁구도가 조성되어 있음.

나. 생산자기구의 역할

- 생산자기구는 환경당국에의 등록의무 수행, 생산자기구에 가입한 생산자에게 필요한 PRN/PERN의 구매, 생산자의 의무달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국가 포장재 폐기물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함.
- 한편, 현재 재활용시장에서 50%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기구인 Valpak은 생산자에게 그린 닷의 사용권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license issuer). 하지만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전통적인 그린 닷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PRN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린 닷의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그린 닷을 부착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님.
- 생산자기구는 그 밖에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기술적 자문 제공

- 의무이행확인서 발급
- 환경당국과의 관계에서 회원 의무생산자의 입장 대변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의무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 제공

5. EPR의무 불이행 시의 제재

가. 의무 불이행 시의 제재

- 법에서 정하는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상한액 없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생산자책임의무규정상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장 높은 벌금은 Red Bull에게 부과된 270,000 파운드 (약 4.5억 원 정도) 벌금임.

6. 영국에서의 EPR 운영 성과

가. 포장재폐기물 회수율의 증가

- 영국에서는 2011년 약 10.8백만 톤의 포장재폐기물이 버려졌고, 이 중 약 67%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1998년에는 포장재폐기물의 27%만이 회수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이며, EPR 제도가 포장재폐기물의 회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